

광주지방법원 2020. 6. 5 선고 2020가단503734 판결 [계약금반환청구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줄

담당 변호사 강현준, 장재원

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서준

피 고 주식회사 C

변론 종결 2020. 5. 15

판결 선고 2020. 6. 5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. 12. 29.부터 2019. 11. 25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 '채권자'는 '원고', '채무자'는 '피고'라 한다).

2. 근거: 자백 간주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○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, 위 이의신청서에는 '원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,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못했고, 원고들의 분양계약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며, 원고들이 지급하였던 계약금은 2020. 2. 20.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'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에 관한 기재는 없었다.

○ 피고는 이후 실질적인 답변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취지로 한 이 법원의 보정권고를 송달받고도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.

○ 피고는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.

○ 결국, 피고는 원고들이 하는 청구원인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.

판사 브지]

별지